질병군 급여의 별도 산정 항목

- 가. 식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3호에
 - 따른 입원기간중의 식대
- 나. 별표 2의1에 열거한 항목에 해당하는 외과전문의 가산
- 다. 복강경 수술 중 개복하여 수술 종결시 추가 산정 비용
 -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중 부득이한 사유로 개복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종결한 경우에는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시 보상하는 239,000원 추가 산정
- 라. 초음파검사료
 - 질병군 진료 시 초음파검사는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의 세부인정기준을 적용하며,
- 마. 4인실 또는 5인실 이용 시 추가비용
- -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른 행위 및 치료재료
- 아.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
 - 질병군 진료 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한 경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는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
-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의 세부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추가산정 자.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수술
 -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수술을 실시한 경우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
- 의 세부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추가산정 차. 의료의 질 평가 지원금
 - 질병군 진료 시 의료의질평가지원금은 가-22의 각 분야별 등급별 '입원'의 소정점수를 질병군 입원일수와 동일하게
 - 추가산정
- 카. 응급의료행위료
- 타. 전문병원관리료
- 전문병원에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질병군 진료시 제1편제2부제1장 산정지침 6. 및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
-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을 적용하여 추가산정
- 파. 제왕절개분만 심야가산

- 소정점수를 2회 추가산정

항 을 적용)

하. 분만취약지역 가산 제2편제4장 산부인과[적용지침] 10. 에 따라 분만취약지에서 제왕절개 분만을 행한 경우에는 질병군 야간ㆍ공휴

- 인정기준에 의한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초음파검사료를 추가 산정
 - 4인실 또는 5인실 이용 시 기본입원료와의 차액을 추가 산정
- 바. 별표2의4에 열거한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
- 사. 별표2의5에 열거한 「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

 - 제1편제2부제19장제2절에 따른 (별표 2) 및 (별표 3)의 응급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제1편제2부제19장제2절의
 - 산정지침 3. 내지 5. 및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적용하여 추가산정
 - 제2편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제9호에 따라 22시-06시에 제왕절개분만을 행한 경우에는 질병군 야간ㆍ공휴
 - 소정점수를 4회 추가산정(단, 분만취약지는 제1편에서 정하고 있는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하 세부사